

2017년 회계연도

사고이월 계획(안)

2018. 1.



2017년 회계연도 사고이월 계획(안)

2017년도에 착수하여 2018년까지 이어지는 계속연구과제의 필요예산과 지출원인행위 후 부득이한 사유로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사고이월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의 계속성을 확보하고자 함.

1 추진 개요

□ 근거

- 회계규정 제27조(예산의 이월)
- 예산총칙 제5조(예산의 이월)
 - ‘지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에 지출이 불가능하거나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 또는 계속 연구과제비와 그 부대 경비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’

□ 기본방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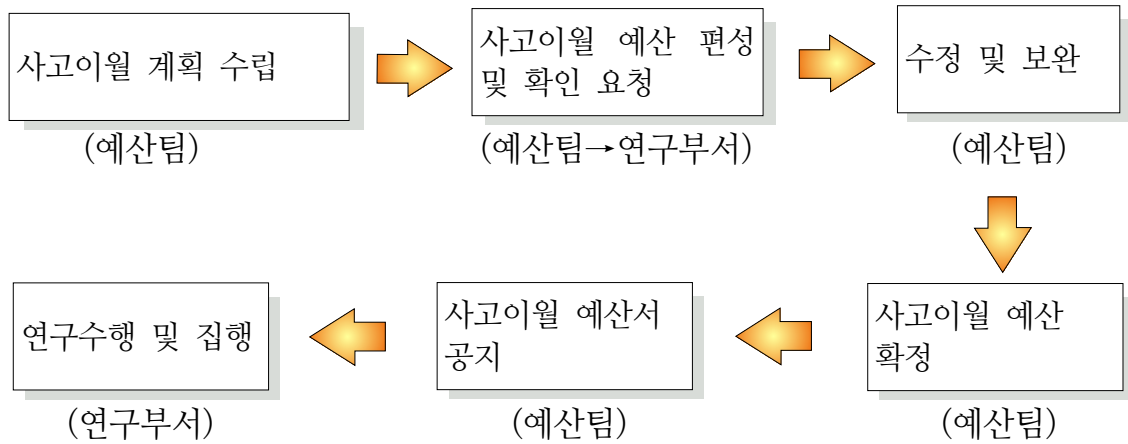
- 계속연구과제 사고이월예산에 위촉연구원 2018년 인건비 인상분 반영
 - 해당 연구과제 실행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
- 정확한 사고이월 예산편성과 연구자의 편의를 위하여 예산팀에서 사고이월 예산 편성 및 추진

□ 대상

- 기초·정책·현안연구 등 자체연구로서 연구기간이 2017년에 착수하여 2018년 까지 이어지는 계속 연구과제 : 2018. 01. 09 현재 45개 연구과제
 - ※ 수탁연구 및 협약연구는 제외
- 2017년에 지출원인행위(계약 등)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

□ 추진기간 : 2018. 1. 9.(화) ~ 2017. 1.25.(목)

2 사고이월 절차



3 계속연구과제 사고이월예산의 사업인건비 조정

□ 사업인건비 조정

- 근거 : 정원외직원 임용규칙
- 대상 : 2017년에 착수하여 2018년까지 이어지는 자체연구과제
- 내용 : 계속연구과제 위촉연구원 연봉급 단가를 2018년 인상된 위촉연구원 연봉급 단가로 조정하여 2018년에 집행
- 방법
 - 위촉연구원 인건비 조정은 연구과제 기간 중 2018년 연구기간만 반영
 - 해당 연구과제의 실행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

4 기타

□ 행정사항

- 2016년 회계연도 사고이월 사업은 재이월할 수 없음.
- 이월예산은 타목적의 용도로 전용할 수 없음.
- 정당한 사유 없이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사업은 사고이월할 수 없음.